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78
- 나. 제 안 자: 신중갑 의원 외 6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5월 23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5월 25일(목)

### 2. 제안사유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포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4. 관계법령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5. 검토보고

### 가. 제정 경위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5월 23일 신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이에스지(ESG) 현황

- ESG 경영<sup>1)</sup>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부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 즉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sup>2)</sup>

1) E(환경 Environment), S (사회 Society),G (지배구조 Governance)

2) 2006년 UN에서 발표한 책임 투자 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을 통해 ESG 이슈의 반영, 정보공개 등이 구체화되며 ESG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기후변화 심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들이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되었음.

-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
-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석탄, 담배, 핵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환경오염 유발, 인권 침해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기금연금도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등 2022년까지 ESG 관련 투자를 운용하는 기금의 50%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이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하여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다는 손실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관내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판단됨.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기도 등에서 ESG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등이 제정하였음.

#### 다.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ESG 경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관내 중소기업과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구청장이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수립,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ESG 경영의 홍보와 교육,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안 제8조는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등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1조는 구청장이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라. 검토 결과

-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를 지원하는 한편,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아직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와 더불어 평가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국내에는 도입 초기 단계인 ESG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개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1

## ESG 관련 자치법규 현황

2023년 2월 기준

연 번	지 역 명	조 례 명	제 정 시 기	소 관 부 서
1	경기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07-19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
2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26	문화경제국 기업지원과
3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03-03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4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30	경제산업국 기업투자과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07-23	경제창업실 창업진흥과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30	경제국 경제정책관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1-04	미래문화국 디지털도시과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1-10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0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29	경제국 기업지원과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기업애로 해소지원단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30	경제기획관 기업지원과
13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31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1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2-10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